

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식 량 정 책 과)

1. 개정이유

현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「양곡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625호, 2026. 8. 27. 시행)됨에 따라, 할인 제공 대상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(제12조의2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에 관한 사항) ①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: 신청일 현재 해당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시설
2. 법 제9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상 :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무상급식을 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단체
- ② 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기준은 법 제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율, 1인당 공급물량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, 지원 목적,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-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·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해당 시설·단체가 제1항에 따른 할인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2조의2(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에 관한 사항) ①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: 신청일 현재 해당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시설 2. 법 제9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상 :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무상급식을 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단체 ②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기준은 법 제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율, 1인당 공급물량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, 지원 목적,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

부장관이 정한다.

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정부
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
는 자 또는 시설·단체는 관할 특
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
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
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
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
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
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
해당 시설·단체가 제1항에 따른
할인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
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전
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
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
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정
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
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
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
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